

사단법인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연합회는 사단법인 서비스산업총연합회라 하며, 영문으로 "The Federation of Service Industries(약칭 FSI)"라 한다.

제2조(목적) 사단법인 서비스산업총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서비스기업의 발전을 위한 제반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선진서비스국가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연합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지역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방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연합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협력 지원 및 상호 이해관계 조정
2. 서비스산업 활성화 정책 제안
3. 서비스 가치 인식 제고 활동 등 정부 및 대국민 홍보활동
4. 정부의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의 지원 및 홍보
5. 서비스산업 관련 연구용역, 전문적 자문, 교육훈련
6. 해외 서비스산업 단체 등과의 교류 협력
7. 기타 연합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① 회원의 자격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정회원은 연합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등을 받은 법인으로서 이사회의 가입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③ 특별회원은 연합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정부기관, 기타 단체, 제1호의 정회원에 속하지 않은 기업, 개인 등으로서 이사회의 가입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6조(가입) 연합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회장에게 제출하고,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에 의결로써 회비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7조(탈퇴) 회원은 이사회에 서면으로 탈퇴서를 제출하고 탈퇴할 수 있다.

제8조(회원명부) ① 연합회의 주된 사무소에 회원명부를 비치한다.

② 회원명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명칭 혹은 성명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혹은 주소지
3. 대표자의 성명
4. 기타

③ 회원명부에 기재한 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회원은 그 변경내용을 즉시 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가 있을 때와 기타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회장은 즉시 회원명부에 이를 기재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 연합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연합회의 제반 사업에 참여
2. 연합회의 각종 서비스의 이용
3. 총회 의결권, 단 특별회원은 총회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제10조(회원의 의무) 연합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정관 및 연합회에서 정한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총회, 이사회 결의사항 준수 의무
3. 회비 납부의 의무
4. 연합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의 의무

제11조(회원자격의 상실)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시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제7조에 따른 탈퇴
2. 제13조에 따른 제명
3. 파산선고 및 해산

② 회원이 제1항의 사유로 사원자격을 상실했을 때에는 연합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하며 기납부한 회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정회원의 대표권) ① 정회원으로서 연합회에 대한 일체의 행위는 회원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만이 행할 수 있다.

② 정회원은 제1항의 대표자와 그 대리인을 연합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내용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회원의 포상 및 징계) ① 회원이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연합회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포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의 포상에 관한 기준·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③ 회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

1. 회비를 3년 이상 미납한 때
2. 정관 등 제 규정에 위배된 행위를 한 때
3. 연합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때

④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자격정지
2. 제명

⑤ 회원의 징계에 관한 기준·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3장 임원 등

제14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연합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5인 이내
3. 이사 40인 이내
4. 감사 2인

② 임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15조(임원의 선출) 임원의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이사회에서 구성한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한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3. 회장,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이사회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선임한다.

제16조(회장의 직무)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회의 의장이 된다.

제17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합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회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사회 및 주무관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제2항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감사는 매 정기총회에 당해연도의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고문) ① 연합회는 필요에 따라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각 서비스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이사회에 심의를 통해 회장이 위촉한다.

③ 고문은 연합회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9조(자문위원) ① 연합회는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각 서비스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연합회 발전에 공헌이 큰 인사 중에서 이사회에 심의를 통해 회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은 연합회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0조(임원의 임기 등)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새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연합회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차임 임원 선임시까지 현 임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1조(임원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제4장 총회

제22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총회는 연합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장, 감사의 선임 및 해임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연합회의 해산
5. 그 밖에 회장,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총회는 의결사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범위를 정하여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총회의 종류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회가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3. 제17조제3항에 따라 감사가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4. 정회원 20인 이상이 서명으로 회의의 목적사항 및 이유를 명기하여 요청할 때

④ 제3항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은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하여 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제24조(총회 의결) ① 총회는 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회장이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결의로 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 ③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회원은 서면에 의하여 다른 사원에게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총회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은 의장이 지명한 출석 이사 3인 이상이 서명한 후 이를 사무국에 보관한다.

제5장 이사회

- 제26조(이사회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회장과 제14조제1항제2호 포함. 이하 이장에서와 같다)로 구성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는 법령, 정관의 규정 및 총회에서 결의된 범위에서 연합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장 추천위원회의 운영
 2. 부회장, 이사, 각 협의회 회장, 각 위원장 등의 선임
 3. 업무운영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4.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가입승인 및 회원의 제명
 7. 총회 소집
 8.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9.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으로 정한 사항
 10.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대하여 그 범위를 정하여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 소집) 이사회 소집은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정기이사회는 회장이 연 1회 소집한다.
2. 임시이사회는 회장 혹은 재적 이사 5분의 1 이상, 혹은 제17조 제3항에 따라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28조(이사회 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회장이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결의로 이사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서 보고해야 한다.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이사는 서면에 의하여 다른 이사에게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의사록)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그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은 의장이 지명한 출석 이사 3인 이상이 서명한 후 이를 사무국에 보관한다.

제6장 위원회, 협의회 등

제30조(위원회, 협의회 등) ① 연합회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정책위원회, 사업위원회, 포상위원회, 연구센터, 교육원, 분야별 협의회, 각 연구회 등을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둘 수 있다.

② 위원회, 협의회 등은 회의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31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연합회의 발전 계획 수립 및 회계연도 사업계획 수립, 운영전반 업무 조정 및 집행을 총괄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각 위원회 위원장, 분야별 협의회 회장이 추천한 인사 등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총무 담당 부회장이 운영위원장이 된다.
-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2조(정책위원회) ① 정책위원회는 연합회 정책 전반을 수립하고 정부에 정책 제안 등을 수행한다.

- ② 정책위원회는 분야별 협의회 회장이 추천한 인사 등 50인 이내로 구성하며, 정책 담당 부회장이 정책위원장이 된다.
- ③ 정책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3조(사업위원회) ① 사업위원회는 연합회의 교육, 인증, 협력사업 등 신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며 재정 확충 등을 수행한다.

- ② 사업위원회는 분야별 협의회 회장이 추천한 인사 등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사업 담당 부회장이 사업위원장이 된다.
- ③ 사업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4조(분야별 협의회) ① 분야별 협의회는 산업별 정보교류, 업무협의를 담당한다.

- ② 분야별 협의회는 연합회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선임한다.
- ③ 분야별 협의회는 연합회의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5조(분야별 연구회) ① 분야별 연구회는 분야별 산업 연구 및 학습 등을 담당한다.

- ② 분야별 연구회 회장은 이사회 동의를 얻어 회장이 선임한다.
- ③ 분야별 연구회의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6조(서비스산업전문연구센터) ① 서비스산업전문연구센터는 서비스산업 관련 조사 및 연구개발 등을 담당한다.

- ② 서비스산업전문연구센터 원장은 이사회 동의를 얻어 회장이 선임한다.
- ③ 서비스산업전문연구센터의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7조(서비스산업교육원) ① 서비스산업교육원은 서비스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 향상 등을 담당한다.

② 서비스산업교육원 원장은 이사회 동의를 얻어 회장이 선임한다.

③ 서비스산업교육원의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7장 사무국

제38조(사무국) ① 연합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의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8장 재정 및 회계

제39조(자산)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회원 등이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40조(회계 연도) 연합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한다.

제41조(경비) 연합회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찬조금 또는 보조금
3.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금
4. 자산에서 생기는 수입금
5. 기타 수입금

제42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연합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회계 연도 개시 전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전에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안에 계상된 것으로서 불가피한 것에 한하여 전년도 집행실적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 ③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예산외 지출이 필요하거나 예산 부족이 발생한 때에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장 보칙

- 제43조(연합회의 해산) ① 연합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에 보고 후 시행한다.
- ② 연합회의 해산시 잔여 재산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나 유사기관에 기증한다.

제44조(정관의 변경) 연합회의 정관은 회장 또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총회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보고) 연합회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지 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 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46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2.10.)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① 초대 회장은 발기인회의에서 추천한 후보 중에서 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초대 부회장 등 임원은 발기인회의에서 추천한 후보 중에서 초대 회장이 임명한다.

③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초대 임원의 임기는 2015년 2월말까지로 한다.

제3조(정관의 변경) 연합회의 주무관청에의 등록과 관련하여 정관의 변경이 부득이 한 경우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4조(회원가입) 제6조에도 불구하고 초대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정한다.

제5조(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등) 이 법인 설립당시의 재산목록은 별지와 같다.